

附加價值稅

—7月부터 稅金·物價 이렇게 달라진다—

調 査 部

理論과 現實

세 稅制인 附加價值稅制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일부업계에서는準備태세의 미비점을 들어 실시시키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단 예정대로 斷行하고 실시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실시를 앞두고 이의 受容태세를 갖추기 위해 그동안 유통·음식·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영수증 주고 받기를 비롯 금전등록기의 보급, 2차에 걸친 豫行 연습의 실시, 사업자 등록의 전개, 8백 50여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작업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란 쉽게 말해서 현행 세제와는 달리 모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진(附加價值)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賣出金額에서 買入金額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物品(또는 用役)을 판매할 때, 그 판매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정수한 세금(賣出稅額)에서 매입할 때, 정수당한 세금(買入稅金)을 공제하여 納付稅額을 계산하며 반드시 領收證(세금계산서)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甲(제조업자)이 1천원에 매입한 물건

(원료)에 5백원의 부가가치(마진)를 붙여 乙(소비자)에게 1천 5백원에 판경우 甲이 내야할 세금의 계산은 먼저 賣出稅계의 경우 판매가격 1천 5백원에 13% 기본세율의 세율을 곱한 1백 95원이 되며 買入稅額은 매입가격 1천원에 10%, 의 세율을 곱한 1백원이 된다.

甲은 원료물품을 구입할 때 1백원의 세금(매입세금)을 뱉으니까 자기가 팔때 乙로부터 받은 매출세액 1백 95원에서 이미 징수당한 1백원을 공제한 금액 즉 95원이 納付해야 할 稅額이 된다.

다시 말하면 매출가액 1천 5백원에서 매입가액 1천원을 공제한 5백원이 이른바 부가가치가 되는데 5백원의 마진에다 10%의 세율을 곱하면 남부세액은 95원이 되어 마진 즉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세금과 같게 된다.

間接稅制의 理論면에서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장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한 消費課稅를 채택하는 경우 이상적인 稅制로 되어 있으나 이의 실시는 課稅행정 및 納稅風土 등 현실여건의 高度化를先行 조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반세법개정에 따른 준비 작업과는 양상을 달리한다.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현행 유통음식세,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ガ스세, 통행세, 입장세 등 8개세목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흡수 통합된다.

그러니까 오는 6월 말까지 판매하는 모든 물품판매

와 관련한 영업행위는 현행 세법대로 세금을 물지만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적용받아 해당되는 세금을 물게 된다.

즉 현행 8개 산업세법에 규정된 54개의 多段階세율을 적용하던 각종 소비세가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기본세율 13%)와 보석등 사치성 물품으로 지정된 32개 품목은 10단계의 특별소비세율(최고 현행 60% 최저 10%)을 적용받게 된다.

과세방식은 ① 6개월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매 2개월마다 豫定申告納付를 하고 ② 輸出산업은 세율, 즉 환급에 의해 완전면세되고 ③ 쌀, 연탄, 수도물, 버스요금 등 기초 생필품과 변호사·계회사·도서·신문 등은 一般免稅대상으로 지정되어 세금을 겉지 않으며 ④ 연간 外形 1천 2백만원(월 1백만원)이하의 개인업소는 본인이 원하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원치않으면 간이방식에 의해 外形 2%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外形課稅(현행營業稅와 같음)를 하게 된다.

이상의 부가가치세제는 첫째 間接稅체계의 개편, 단순화, 둘째 輸出品에 대한 完全면세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세째 投資 촉진, 네째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累積課稅 회피등 현행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한다는 명분과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제의 치형적인 결함은 무엇보다도 세부담의 逆進性에 있다.

間接稅의 屬性은 일반적으로 祖稅轉嫁의 폐단을 들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는 개별 상품가격 속에 포함된 세금의 크기가 분명해지며, 消費者에의 전가도 정확하게 이루어 진다.

이와같은 사실은 부가가치세제의 적용을 받게되는事業主는 물론 일반소비자들도 꼭 알아 두어서 물품가격에 얹혀지는 일정규모의 세금을 비롯 부당한 값을 올려받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

附加價值稅法상 납세의무자는 ① 國內에서 营利目的有無를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事業者)와 ② 國外로부터 財貨를 輸入하는 者(輸入者)로 되어 있다.

세법규정대로 사업자와 수입자는 일단 납세의무자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들 사업주나 수입자는 정부를 대신해서 消費者로부터 세금을 물품가격에 포함시켜 징수할 뿐 그 자신은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는 특징이다.

즉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셈.

물품이나 용역등의 댓가를 치를 때, 소비자들은 영수증을 꼭챙겨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때는 물품가격속에 포함된 세금이 얼마나 붙었나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脫稅를 방지한다는 뜻에서 보다도 부당한 값을 치르지 않기 위한 방패도 된다.

10%의 單一稅率에 의해 소득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똑같이 물품가격에 얹혀 세금을 내야 하는만큼 그결과 저소득자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무겁게하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다만, 세금고지서를 받아들고 세금이 過重하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고지서없이 물품값에 얹혀 있는 세금(間接稅)에 대해서는 둔감할 뿐이다.

賃金은 부가가치(마진)로 따지게 되며, 마진 속에 賃金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勞動集約의인 中小企業의 경우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시장경쟁에서 그만큼 劣勢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물론 연간 거래금액 1천 3백만원(代理·仲介·周旋·委託賣買·醫給의 경우 3백만원)에 미달되는 영세 小企業에 대해서는 去來金額의 2%(代理등의 경우 3.5%)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課稅特例를 두고 있으며, 6개월간의 납부세액이 7천 5백원선을 미달하면 세금을 받지 않는 소액 불징수 특례를 두고 있기는 하다.

理論상으로 현행 物品稅등의 個別消費稅가 高率로 課稅되던 품목의 가격은 特別消費稅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下落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의 가격은 上昇할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8백 50여개 품목에 대한 개개 상품별 또는 유통단계별 가격조사를 매듭, 경제기획원 물가당국에 이미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분석, 부가가치세 실시후 가격변동폭을 算定,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는 品目別基準價格을 告示, 가격통제를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제도전환에 따른 초기단계에서 가격조작과 心理의 요인에 의해 꼭 내려할 가격이 내리지 않고 오르지 않아야 할 가격이 턱없이 오르는 예는 흔히 경험해 온 바다.

이태리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실시로 물가가 한꺼번에 12% 이상이나 뛰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稅金計算書(領收證)를 교박교박 주고 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실시의 성패를 가름한다면 물가여제 문제는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극복해야 할 과제다.

국세청은 個人法人을 통틀어 全事業者 73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실시에 대비, 각종 준비작업을 펴고 있다.

納稅義務者

附加價值稅는 납세자 자신이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申告納付하는 제도다.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모든 사업자는 ①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② 부가가치세제 실시이전의 재고품을 신고하며, ③ 물건을 팔때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야 하고 ④ 반드시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영수증)를 주고 받아야 하며, ⑤ 2개월마다 예정신고납부, 6개월마다 소정의 세금을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현행영업세 등 간접세제 하에서의 납세의무자와 같이 사업자는 모두 포함되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범위가 다르며 해야할 일도 다르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는 免稅대상폭을 현행 영업세제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면세대상에 들면 사업소득세는 내지만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게되어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닌 것이다.

싸전이나 어물전, 연탄가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

세되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첫째 면세대상자, 둘째 小額不徵收대상자(6개월납부세액 7천 5백원미만)를 제외한 개인업체나 法人 또는 法人格 없는 社團財團등이 영리의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납세의무자로 설명된다. 납세의무자는 연간 外形 1천 2백만원 이하의 課稅特例者(外形 2%課稅, 代理등은 3.5%)와 이외의 모든 납세의무자인 一般課稅者(기본부율 10% 적용)로 구분된다. 세금은 크게 나누어所得에 과세하는 所得稅와 消費行爲에 과세하는 消費稅로 나눌 수 있다.

소비세는 모든 소비로부터 국가가 직접세금을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국가는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를 間接稅라고 한다. 直接稅인 所得稅는 세금을 부담하는 檢稅者와 세금을 내는 납부의무자가一致되나 間接稅인 消費稅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消費者이고 세금을 내는 납세의 무자는 事業者인 것이다.

간접세인 부가 가치세 역시 거래단계의 마진, 즉 부가가치에 과세되지만 종국에는 소비자가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消費行爲」에 세금이 轉稼되는 것으로 귀착된다.

다시말하면 事業者는 법상 납세 의무자이지만 사실은 정률를 대신해서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가격에 포함해서)할 뿐, 그 자신은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물품의 유통단계별 마진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마진폭을 확대조작할 여지가 많으며, 마진폭을 확대조작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한푼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만 골탕먹는 격이 된다.

물품의 공급이 원활치 못해 품귀현상을 빚거나 가격통제의 행정력이 무력할 경우 사업자의 가격조작 횟수가 심해지면 소비자부담은加重될 염려가 있다.

경제기획원은 국세청이 조사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 8백여개 품목의 原價分析을 하여 유통단계별로 가격을 告示하겠다는 의도도 바로 이같은 부작

용을 막아 보자는데 있다고 하겠다.

한편 課稅特例者(영간 外形 1천 2백만원)는 영업세와 같이 대상고에 2%(代理등은 3.5%) 과세하는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부가가치세 적용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주고 있어 가령 外形과부를 포기하고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면 이런 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 일반 과세납부의 무자가 된다.

또한 外國에서 물품을 수입한 輸入者의 경우는 수입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납부의무자가 되며,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물품을 팔 때 사가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買出稅額에서 공제 받는다.

현재 영업세를 내고 있는 싸전이나 연탄가게 어물전, 두부제조판매·각종未加工食料品·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전물주, 변호사, 회계사 등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기초식품이나 생필품 및 기타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대로 된다면 이를 업소는 현재내고 있는 영업세가 부가가치세의 실시를 계기로 없어지며 그렇다고 부가가치세로 대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내던 영업세만큼은 해당물을 값이나 서비스 용역代金이 당연히 내려가야 옳다.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업종은 農畜水產物을 비롯, 수도물, 우표, 印紙, 公共通信, 금융업, 부동산임대, 土地, 변호사, 예술창작품, 학술관, 종교단체, 가수, 배우 등 18개 업종내지는 사업부문과 14개 부문의 財貨의 輸入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들 免稅대상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나 수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각기 해당되는 소득세는 내야하는 것이다.

세법시행전에 납세의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이다. 납세의무자를 비롯 납세의무 면세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누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20일전까지 소관세무서에 事業者登錄을 해야한다.

과세특례자의 사업자등록절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똑 같다. 사업자 등록은 납세의무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래자료의 양성화나 기타 부가가치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않으면 買入稅額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세법상 效力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판매금액 또는 용역제공 댓가에 대하여 1%, 법인은 2%의 未登錄加算稅와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업자 등록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즉 營業者 納稅番號證(經營者納稅番號證)도 포함을 이미 교부받은 繼續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 납세번호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시하면 된다.

사업장이 2개이상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主事業場에서 총괄납부하려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청하고 새로 개업한자가 課稅特例者로 예상되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 싶으면 등록과 동시에 課稅特例 적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실시에 앞서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소매업 음식, 숙박업,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하고 거래마다 영수증은 꼭 떼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본인 신고납부로 끝나며,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5년간 보관도록 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와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과 똑같이 인정, 영수증교부금액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특전을 부여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금전등록기를 조작 또는 불성실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 다시 推計調査(認定課稅)를 받고,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당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영수증)를 주고 받고, 세금을 자신이 계산, 자기 스스로 신고납세하는 제도이므로 외국에서는 각종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게

는 加算稅나 별칙을 강화,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課稅 표준

납세자가 복잡한 稅法 규정을 쉽게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새 制度인 附加價值稅法을 납세의무자 개인이 해득하기란 더욱 어려운 노릇이다.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특별히 免稅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財貨와 用役 및 輸入하는 物品』이다.

사업자가 파는 모든 財貨·用役은 물론 수입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표기적으로 규정하고 이 중에서 정책적 또는 성질상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는 것을 制限적으로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일반적인 면세대상 외에도 기계나 건설자재 등 投資材도 매입할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금을 시설을 한 다음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가 있어 기업의 投資材는 사실상 면세특권을 받는다.

그리고 같은 물품 또는 재료라도 국내에서 팔면 세금을 내지만 이를 수출을 할 때는 이미 국내에서 사들일 때 낸 세금을 환급(零稅率적용) 받을 수가 있어 수출품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에서 財貨라는 것은 제품을 비롯해 원료 기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有體物이외에 動力 热冷凍 기타 관리할 수 있는 自然力이 모두 포함된다.

『用役』은 財貨이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役務 서비스를 말하는데 건설업,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업, 개인서비스업, 영업권, 특허권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되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급』이란 물품을 팔거나 입대 또는 用役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代價를 받는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지만 예외적으로 엣가를 받지 않고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과세되는 때가 있는데 예컨대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을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다.

즉 이런 물품을 자가공급을 하거나 私用消費 또는 사업상 贈與할 경우는 엣가를 받지 않더라도 정상 賣出(판매)한 것으로 간주, 과세 대상이 된다. 物品의 수입은 과세되지만 用役의 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밖에 「財貨의 供給」으로 보지 않는 경우 (免稅와 다른)가 있는데 ▲ 質權이나 低當權을 비롯해 讓渡擔保의 목적으로 引渡하는 각종 擔保提供하는 행위와 ▲ 事業자체를 양도하는 경우(未收金과 未支給金은 제외) 등이다.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一般 免稅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4가지 類型이 있는데 첫째 곡물, 채소, 연탄 등 생필품과 둘째 의료보건 용역, 신문·방송 등 문화용역, 부문 세째 면호사, 배우 등 인적용역, 네째 労動, 부동산임대, 금융등인데 새세법은 일일이 면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農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나라에 따라 다르나 우리나라에서는 免稅대상이 된다.

농업의 영세성과 농산물을 저소득층의 家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과세대상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課稅標準은 『物品이나 用役의 공급가격』이다.

輸入物品인 경우에는 ▲ 關稅의 課稅價格(일반적으로 수입가격)과 ▲ 關稅 및 ▲ 等別消費稅 또는 ▲ 합계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영업세와 달리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른바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낸 關稅나 特別消費稅 또는 酒稅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보석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첫째 수입가격(관세의 과세가격), 둘째 關稅금액, 세째 特別소비세 금액 등을 포함한 가격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같은 조치는 수입의 억제효과를 노린 것인데 특히 부가가치세 실시를 계기로 32개 불요불급 또는 사치성품목을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으로 설정, 고율의 과세를 하게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물품과 용역의 공급가격인데 공급가격에는 부가가치세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이 바로 공급가액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금전이외의 것으로 대금을 받을 때는 그 물품 또는 용역을 時價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와 利潤의 개념을 혼돈해서는 안된다.

「부가가치」란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한 금액 賣出金額에서 이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사들인 각종 원료·자재·기타 등을 사들인 금액 買入金額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컨대 화장품 소매상이 화장품을 1천원에 매입하여 1천 5백원에 판 경우, 「부가가치」는 5백원(1천 5백원에서 1천원을 공제)이 된다.

이 경우 소매상이 자기 소유점포를 가지고 있고, 종업원도 두지 않고 또 지불해야 할 임대료도 없다면 「부가가치」는 「이윤」과 일치 된다.

즉 「부가가치」 5백원은 곧 「이윤」이다.

그러나 임대료, 급료, 이자를 지불할 경우 「이윤」은 그만큼 줄어 들게 되므로 「이윤」의 크기는 「附加價值」에서 ▲ 賃借料 ▲ 級料 ▲ 利子 등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는 ▲ 임차료 ▲ 급료 ▲ 이자 ▲ 이윤의 합계額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는 과세표준 즉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어떤 기준에서 정하느냐가 문제다.

물품을 팔 때, 계약에 의해 대금을 주고 받으며, 계약에 의해 정해진 공급가액이 대체로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나 계약을 한 후 割引販賣한 할인액이나 貸損

金 또는 奬勵金 등은 課稅標準으로 算入된다.

즉 10만원에 물건을 팔고 1개월 후에 대금을 받기로 한 것을 미리 돈을 반되 그대신 9만원에 割引 판매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금액 10만원을 공급가액, 즉 판매액으로 보고 여기에 세금이 붙는다.

貸損金의 경우는 가령 物品을 외상 판매했는데 돈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도주했다든가 파산을 한 경우 등인데 이런 때라도 물건 값은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동일 거래관계에서 지급하는 사례금이나 판촉비 등 장례금도 물건값과 똑같이 취급,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예누리額이나 환입된 財貨의 가액 및 파손, 毀損, 멸실된 재화, 이밖에 국고보조금 방위세 등은 과세표준에 들어 가지 않는다.

예누리額이란 처음부터 값을 깎아 물품을 파는 경우다. 또 물건을 팔았는데 산 사람에게 도착하기 전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나 反品된 물건 등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팔고 산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과세표준으로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割賦販賣 또는 延拂판매의 경우 과세표준은 당초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금의 각부분이 되며 외상販賣는 공급한 물품의 총외상 판매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의 算入기준은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고 있으나 상거래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각종 변태적인 가격 조작행위가 예상된다. 談合에 의한 가격 조작이나 파는 사람이 買入稅額을 부담하면서까지 자기 물품을 팔려는 덤핑행위들은 비록 그것이 소비자부담을加重시키든 않든간에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한다.

稅率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현행 8개 間接稅의 세율이나 세율이 어떻게 흡수되나 부가가치세는 「自己賦課自己納付」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기가 하는 사업이 어떤 과세대상이 되며, 얼마만큼의 세금을, 어떻게 따져내야 하는가를 똑바로 알아 두어야 한다.

만일 세금계산서를 빼지 않는다면 물품을 사고 팔 때 거래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해서 받지 않는 세금은 자기가 대신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제 실시로 없어지는 현행 8개 간접세의 세율구조는 54개나 된다. 이처럼 多段階의 세율구조가 앞으로 부가가치세의 실시로 크게 나누어 ▲ 10%의 單一稅率로 되어 있는 附加價值稅와 ▲ 10단계 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等別消費稅로 흡수된다.

특별소비세로 흡수되는 대상은 현행 물품세, 입장세 대상 품목 중 사치성 및 불요불급 품목 29개를 선정 최고 1백 60%, 최저 10%의 세율(10단계 구조)이 적용되어 과세방법 또한 현행 물품세나 입장세와 똑같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별개의 稅이며 특히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算入,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을 이해하기 쉽게 과세대상을 구분하면 ①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一般課稅 대상 ② 課稅特例者인 外形課稅대상 ③ 少額不徵收대상 등이다.

먼저 外形과세대상은 현행 영업세와 같이 판매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징수한다. 외형과세대상은 小商人에 대한 징세행정의 간편화를 위해 둔 것인데, ▲ 연금거래금액 1천 2백만원 미만자와 ▲ 代理·仲介·周旋·위탁매매·都給등의 경우에는 3백만원 미만자로 되었고, 세율은 전자가 2%, 후자가 3.5%로 되어 있다.

한편 6개월 납부세액이 7천 5백원 미달되는 영세상인은 이른바 少額不徵收대상으로 세금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세율 적용과 세금 산출의 예를 들어 보자.

예컨대 1천원의 제품을 파는 경우(製造業·都賣業小賣業을 불문) 상품대금 1천원에 세율 10%를 곱하면 세금(賣出稅額)은 1백원이며,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상품값 1천원에 세금 1백원을 보탠 1천 1백원

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만일 이 사람이 1천원의 상품을 만들 때 원료등 재료구입시에 정수당한 세금이 가령 30원(買入稅額)이라면 1백 50원에서 50원을 뺀 80원을 세무서에 납부한다.

10%의 기준세율은 一般免稅대상자, 수출업자인 零稅稅率(完全免稅)대상자, 이밖에 課稅特例者, 少額徵收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다.

賣出세액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했거나 징수할 부가가치를 말하고 買入세액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징수당하거나 징수당할 부가가치를 말한다.

製造業者 販賣業, 서비스업의 경우 세금을 산출해 보자.

製造業者 甲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4천원의 原材料 1천원의 副材料, 1천원의 動力과 1천원의 기타 물품 및 용역을 매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업자 乙(도매 또는 소매상)에게 1만원(세금제외)에 팔았다고 하자.

甲은 제품을 1만원(세금제외)에 팔았으니까 세율 10%를 적용하면 매출세액 1천원을 물품값에 얹어 乙로부터 징수한다.

甲의 買入세액은 원재료, 부재료, 동력 및 기타등 7천원의 10%인 7백원.

따라서 甲이 내야할 부가가치세액은 1천원에서 7백 10원을 뺀 2백 90원이다. 또 販賣業者 乙은 甲으로부터 1만원에 사서 소비자 丙에게 1만 2천원(세금제외)을 받고 팔았다.

판매업자 乙은 甲으로부터 살 때, 5백원의 운송비를 지급했고, 또 자기 점포에서 사용한 電氣, 電話와 기타 사무용품 등에 대한 비용으로 5백원을 지급했다.

乙의 매출세액은 제품값 1만 2천원의 10%의 세금 1천 2백원이다.

買入세액의 내용은 ① 제품을 살 때 낸 세금 1천원 ② 운송비에 지급한 세금 65원 ③ 전기사용등 기타비용에 낸 65원의 세금 등 총 1천 1백 30원이다.

따라서 1천 2백원에서 1천 1백 30원을 공제한 금액 70원이 판매업자乙이 부담하는 세금이 된다.

서비스없자丁의 경우 운송료수입이 1만원(세액제외)에 달했는데, 운송업에 들어간 비용 즉 다른 기업으로부터 5천원의 디젤油와 이밖에 전기요금, 전화 및 사무용품 등으로 1천원을 지급했을 경우丁의 매출세액은 운송료 수입 1만원의 10%인 1천원이며, 買入세액은 디젤油 5천원의 10%인 5백원과 전기 등 기타 비용합계 6천원의 10%의 세금 합해 6백원이다.

따라서 내야할 세금은 1천 백원에서 6백원을 빼 4백원이 된다.

수출을 한 경우에는 零稅率, 즉 完全면세를 받는다.

物品을 수출하기 위해 상품을 매입하면 매입물품에 대한 매입 세액(10%)을 징수당하게 되나 수출한 물품에는 零稅率을 적용하게 되므로 결국 수출업자는 물품을 살때 지불한 세금이 자기부담으로 남게된다. 그러나 이 매입세금은 정부로부터 還給을 받기 때문에 완전면세가 된다.

이같은 조치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면세대상은 식료품을 비롯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의사가 개업을하기 위해 각종 사무부·비품 등을 사들일 때는 매입세액을 징수당하나 진료비 등에는 매출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일반면세자가 자기가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免稅포기신청으로 자기가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농·축·수산물 등 기초식품은 일반면세대상이다. 農產業의 경우 예를들면 돼지를 사육, 국내에 소비하면 돼지 사육에 필요한 구입사료의 대금을 지불할 때 10%의 세금을 축산업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사육한 돼지를 팔때는 매출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이 축산업자가 사육한 돼지를 수출하면 사

료를 살때 낸 매입세액을 정부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稅金 계산서

稅金計算書 또는 領收證은 부가가치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한마디로 말해 세금계산서 없는 부가가치세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稅額控除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도에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한 계산서, 즉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 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의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사는 사람이 買入稅額을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주고 받기가 확립된다는 것은 곧부가가치세제의 定着化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떼고 어느때 교부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떠맡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탈세를 막기 위해 서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감안 물품을 거래할 때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설기재에 대해서는 일반租稅犯의 처벌규정보다 별처를 강화해 놓고 있다.

세금계산서가 정확하게 실시되면 기업이나 사업자가 손쉽게 파세자료를 누락시킬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고 이 세금계산서의 파세자료는 컴퓨터 처리로 모두 판매한 사업자의 파세자료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판매액이 일정수준이상의 업체가 교부하는 ▲稅金計算書와 판매액이 일정수준 이하의 업소가 발행하는 ▲簡易稅金計算書 또는 금전등록기에 의한 領收證이 있다. 세금계산서를 떼지 않든가 잘못 떼었을 때 어떤 손해

가 오는가를 알아 보자.

稅金計算書를 떼는 업소는 1년간 거래 실적이 1천 2백 만원이 상인 일 반납세의 무자(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必要記載」사항과 「任意記載」사항 이 있다.

꼭 기재해야 할 것은 ① 판매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사는 사람의 등록번호 ③ 판매 가격(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일자 등이며任意事項은 ① 판매자의 주소 ② 사는 사람의 주소 성명 ③ 공급품목 ④ 단가와 수량 ⑤ 인도일자 ⑥ 거래의 종류 등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내지 않을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릴 때 등에는 加算稅를 물게 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먼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① 認定課稅의 대상이 되며, ② 교부하지 않은 금액의 개인은 1%, 法人은 2%의 加算稅를 물고 ③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벌금으로 해당금액의 2배를 내게 된다.

예를 들면 물품의 賣出金額(판매 가격) 2천만원에 買入金額이 1천 5백 만원인 개인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옳게 교부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매출세액 2백 60만원에서 매입세액 1백 95만원을 공제한 65백만원만 내면 끝난다.

만일 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① 65만원의 부가가치세 이외에 ② 外形 2천만원의 1%인 20만원의 加算稅와 ③ 매출세액 2백 60만원(매출금액의 13%), 2배인 5백 20만원을 벌과금으로 따져 총 6백 5만원을 내게 된다. 거의 1백 배를 더내는 셈이다.

한편 이 사람이 물품을 살 때, 買入金額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에는 ① 부가가치세 6만 5천원 ② 이미 자기가 물품을 살 때, 거래상대방에게 낸 매입세액 1백 95만원(매입 가격 13%)을 공제 받지 못하며 ③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 1백 3만원 이하의 벌금 등 총 3백 60만원의 세금 등을 내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조작을 한 것이 발

각되면 그 사업체는 거덜이 난다.

簡易稅金計算書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의 성명과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 간단한 세금계산서다.

교부대상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와 연간 外形 1천 2백 만원 미만의 課稅特例者(영세 업자)로서 ① 소매업 ② 음식점(다과점 포함) ③ 숙박업 ④ 목욕 이발 미용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⑦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전력이외의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⑧ 기타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이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일정한 규격의 것을 견인을 찍어 각업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판매자란은 印刷 또는 고무印을 사용토록 하고 ① 품목·수량·단가·금액을 기재하여 보관하면 記帳한 것과 똑같이 인정하고 ③ 고객이 받아가지 않는 영수증은 영수증함을 설치 보관토록 하는 한편 ④ 7월 1일부터는 유홍·음식·숙박업소의 요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간이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의 1%)토록 하고 있다.

금전등록기는 소매업·음식·숙박업·각종서비스업 중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금전등록기의 감사데이프를 보관하면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취급한다.

이밖에 輸入稅金計算書는 관세청장에 위임세금을 징수하고 교부하도록 되었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포함)의 交付義務가 면제되는 사업은 ① 택시운송 ② 노점·행상 ③ 무인판매 ④ 자가사업 생산 또는 취득한 물품을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인데, 이는 사업의 성질상 세금계산서를 뗀 수 없는 경우라고 하겠다.

앞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공급가격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黑書로 당초공급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朱書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 교부해야 한다.

附加價值稅는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징수, 자진납부하는 세금이다.

申告의 納付

세금의 계산→부과→징수→신고→납부에 이르기까지 납세의무자 자신이 끌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과가치세가 명실공히 옳게 실시되려면 세금의 계산에서부터 납세에 이르기까지 납세의무자(사업자)가 각종 의무규정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를 모를 때에 초래되는 부작용은 예상밖으로 크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한 부과가치세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営業稅 去來源泉徵收제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営業稅 거래원천 징수는 거래상대방이 납부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만 부과가치세의 징수는 자기가 납부한 세액을 징수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한편 부과가치세제의 세금계산서 제도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去來源泉徵收 領收證 제도 및 販賣報告義務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일부 업종이나 일부거래 수준 이상의 기업에서는 사실상 부과가치세제와 동질적인 징세기술을 습득해 오고 있다.

부과가치세제는 세금계산서의 취급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납세의무자 사업자에 대해 벌칙이 엄한 것과 같이 不誠實申告 납부자에 대한 벌칙 또한 일 반납세의 경우보다 강화해 놓고 있다.

부과가치세의 납세기한은 6개월로 되어 있지만 2개월 단위로 예정기한 선고기한을 두어 그 기간동안의 거래실적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현행 영업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경우에는 課稅標準과 稅額이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은 후 정부세무서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과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기간이 끝난 후(9월·12월) 20일이내에 부과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확정하게 되며, 정부가 다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거나 조세포탈의 우려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이 불성실할 때는 재조사는 물론 추세파세를 받게 된다.

부과가치세의 납기는 제 1기가 1월~6월, 제 2기가 7월~12월로 되어 있으며, 2개월마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3월 20일, 5월 20일이 예정신고 기한, 7월 20일이 1기분 확정신고 기한이며, 2기분의 예정신고 기한은 9월 20일, 11월 20일이며, 확정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20일이다.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한 금액에 변동이 없을 때는 최종 2개월분만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의 납부절차와 같이 통관시에 부과가치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판매시에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통관시 납부한 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2개월 또는 6개월마다 세무서에 낸다.

사업장이 2개이상 있는 사업주 경우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總括納付承認을 받아 主事業場 소판세무서에 총괄신고 납부할 수 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서 외에 ① 세금계산서(교부받은 것과 교부한 것,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② 輸出면장등 零細率 적용증명서류(零稅率 대상자) ③ 早期還給신청서(영세율 적용 또는 事業設備 투자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자) 등을 구비해서 내면 된다.

신고·납부 때에 이밖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2개월마다 하는 예정신고 때에 누락된 과세자는 확정신고 때에 보완해서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을 계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즉 賣出稅額보다 買入稅額규모가 클 때는 다음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差減하고 그때도 殘額이 있을 때는 확정신고기한 終了日로부터 10일내에 還給을 한다.

이를 一般還給이라고 한다.

一般還給과는 달리 輸出 등을 하여 零稅率 적용에 의해 환급을 받거나 사업설비를 투자 또는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 확정

신고가 아니라 2개월마다 하는 예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早期還給을 한다.

早期還給은 각 예정신고기한 개시 10일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다.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벌칙이 있는데, 첫째 사업자가 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未交付) ▲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소판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未提出) ▲ 세금계산서를 냈지만 앞서 말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不明에는 그 판매금액 또는 용역 공급 대가에 대해, 個人사업자는 1% 法人사업자는 2%의 가산세를 내게된다.

둘째 예정신고에 내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면(遲延提出) 개인은 0.5% 法人은 1%의 加算稅를 부과한다.

세째 申告納付 不誠實加算稅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還給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申告不誠實)에는 그 미달하거나 초과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네째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納付不誠實)에는 미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밖에 사기나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면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逋脫세액의 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되며 세금포탈의 既逐시기는 확정신고기한의 경과로 성립된다.

부가가치세 실시 이전의 재고품은 부가가치세시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즉 7월 14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在庫品은 이미 현행 間接稅를 낸 것 이기 때문에 물품가격에 포함된 舊間接稅額은 정부가一定率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을 해준다.

특히 종전 物品稅, 織物類稅 또는 石油類稅가 부과된 재고품은 舊間接稅를 냈다는 證明만 하면 實額을 還給해 준다.

舊間接稅의 공제율은 추후결정되며 공제금액의 지급은 처음 4個月동안 환급금액의 3분의 2범위내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2개월동안에 지급한다.

그러나 課稅特例者가 보유하고 있는 在庫品은 舊間接稅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고품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第37號 食品工業

1970年 10月 18日 登錄 바 第355號 1977年 6月 30日 發行

發行兼
編輯人 朴炳圭

發行處 社團法人 韓國食品工業協會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4街 125의 1

(進洋아파트 610호)

㉙ 8760 ㉚ 6035

對替口座・서울中央 610501

印刷人 由盛印刷株式社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冷泉洞 218

㉗ 3791 ㉘ 5826

(隔月刊)